

수단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2023년 5월

목차

서론	1
영토에 대한 접근 및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3
국제적 보호 신청에 대한 부정적 결정의 정지	4
수단 국적자 및 과거 수단 상주 무국적자들의 현지 체재 중 신청	4
난민 및 비호신청인 (타국 국적자)	5
송환 금지 권고	5

서론

1. 2023년 4월 15일, 수도 하르툼을 포함한 수단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압델파타흐 알 부르한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SAF)과 모하메드 "헤메티" 함단 다갈로(Mohamed "Hemedti" Hamdan Dagalo)가 이끄는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의 분쟁이 발발했습니다.¹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² 광범위한 전투로 인해 식량, 물, 의약품, 연료 및 전기가 부족해졌고, 민간인들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³

¹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opping Sudan's Descent into Full-Blown Civil War, 2023년 4월 20일, www.crisisgroup.org/africa/horn1africa/sudan/stopping-sudans-descent-full-blown-civil-war.

² BBC, Sudan crisis: Civilians facing catastrophe as 100,000 flee fighting - UN, 2023년 5월 3일, <https://www.bbc.com/news/world2africa-65448691>; 유엔인도지원조정국, Sudan: Clashes between SAF and RSF - Flash Update No. 9, 2023년 5월 2일, <https://reliefweb.int/report/sudan/sudan-clashes-between-saf-and-rsf-flash-update-no-9-2-may-2023>.

³ AP News, Heavy Clashes Rock Sudan's Capital Despite Truce Extension, 2023년 4월 28일, <https://apnews.com/article/sudan-war-military-rsf-truce-civilians-7a7c558e8a5ce2a23bd7049641e14782>; 유엔인도지원조정국, Sudan: Clashes Between SAF and RSF - Flash Update No. 7, 2023년 4월 26일, <https://reports.unocha.org/en/country/sudan>; Al Jazeera, Sudan

2. 이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수단에는 370만 명의 실항민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1,58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⁴ 무력분쟁의 영향으로 인도적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안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대응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⁵
3. 무력 행위를 중단하라는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단 내 과거 분쟁으로 인해 이미 국내 실항민이 된 사람들과 수단에서 안전을 구하던 다른 국가의 난민을 포함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전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⁶ 새롭게 발생한 국내 실항에 더해,⁷ 수단을 탈출한 사람들이 인근 국으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흐름이 목격되고 있으며, 특히 차드로 유입되는 수단인, 남수단으로 귀환하는 남수단 난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Updates: WHO Says 60% of Khartoum Health Centres Closed, 2023년 4월 26일, www.aljazeera.com/news/liveblog/2023/4/26/sudan-live-news-truce-violations-worsen-civilian-suffering; Devex, Health System under Attack in Sudan's 'Horrorific' Conflict, 2023년 4월 20일, www.devex.com/news/health-system-under-attack-in-sudan-s-horrific-conflict-105382.

⁴ 유엔난민기구, Data Portal: Sudan, <https://data.unhcr.org/en/country/sdn>, accessed 28 April 2023년 4월 28일; 유엔인도지원조정국, Sudan Humanitarian Needs Overview 2023, 2022년 11월 7일, <https://reliefweb.int/report/sudan/sudan-humanitarian-needs-overview-2023-november-2022>.

⁵ 유엔난민기구, Sudan: UNHCR Warns Forcibly Displaced Are Facing Worsening Risks in Sudan and Region, 2023년 4월 28일, www.unhcr.org/news/briefing-notes/sudan-unhcr-warns-forcibly-displaced-are-facing-worsening-risks-sudan; Axios, Sudan "Staring into the Abyss" as Humanitarian Situation Worsens, 2023년 4월 26일, www.axios.com/2023/04/26/sudan-humanitarian-death-toll-hospital-biohazard; 유엔아동기금 외, Fighting in Sudan Rapidly Worsening an Already Dire Humanitarian Situation for Children, Warn UNICEF, Save the Children and World Vision, 2023년 4월 26일,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fighting-sudan-rapidly-worsening-already-dire-humanitarian-situation-children-warn>.

⁶ 유엔난민기구, UNHCR's Grandi: To Avoid Further Suffering and a Major Refugee Crisis, Sudan Needs Urgent Peace Efforts, 2023년 4월 26일, www.unhcr.org/news/unhcr-s-grandi-avoid-further-suffering-and-major-refugee-crisis-sudan-needs-urgent-peace; 유엔난민기구, UNHCR Mobilizes to Help People Fleeing Sudan for Neighbouring Countries, 2023년 4월 25일, www.unhcr.org/news/unhcr-mobilizes-help-people-fleeing-sudan-neighbouring-countries.

⁷ 2023년 5월 2일 기준, 수단내에서 분쟁으로 인해 약 334,000명의 새로운 강제 이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인도지원조정국, Sudan: Clashes between SAF and RSF - Flash Update No. 9, 2023년 5월 2일, <https://reliefweb.int/report/sudan/sudan-clashes-between-saf-and-rsf-flash-update-no-9-2-may-2023>.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목격되고 있습니다.⁸

영토에 대한 접근 및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4. 수단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국가가 수단에서 피신하는 모든 국적의 민간인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수단 국적자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하여 다른 국적자 및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수단 분쟁을 피해 피신했지만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제3국 국민은 향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안전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대규모 입국자에 대비하고 있는 수단 인근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수단인과 수단에 상주했던 무국적자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모든 신청은 국제난민법 및 지역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피해 수단을 탈출한 사람 및 분쟁으로 인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없어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수단인들이 1969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 협약 제1조 제2항⁹ 혹은 카타헤나 선언¹⁰에 따른 국제적 보호, 또는 유럽연합 자격요건지침 (EU Qualification Directive) 제15조 제c항에 따른 보충적 보호와 같은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¹¹ 또한 수단에서 분쟁을 피해 탈출했거나 이로 인해

⁸ 유엔난민기구, Sudan Situation - UNHCR External Update #4, 2023년 5월 2일, <https://data.unhcr.org/en/documents/details/100409>; 유엔난민기구, Sudan Emergency | Population Movement from Sudan as of 1 May 2023, 2023년 5월 2일, <https://data.unhcr.org/en/documents/details/100372>.

⁹ 아프리카통일기구,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 ("아프리카통일기구 난민협약"), 1969년 9월 10일, 1001 UN, Treaty Series 45, www.unhcr.org/refworld/docid/3ae6b36018.html.

¹⁰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Colloqu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 Central America, Mexico and Panama, 1984년 11월 22일, 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para. III(3).

¹¹ 유럽연합, Directive 2011/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a Uniform Status for Refugees or for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for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Recast), 2011년 12월 13일,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1L0095&from=EN>, 제15조.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1951년 난민협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¹²

6. 수단 전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엔난민기구는 국내피신 또는 대안적 재배치의 가능성을 이유로 수단인과 과거 상주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7.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F항 배제 조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¹³ 이러한 경우, 해당인을 국제적 난민 보호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호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들은 입국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무장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민간인 난민들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¹⁴

국제적 보호 신청에 대한 부정적 결정의 정지

8.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수단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수단인 혹은 또는 수단에 거주했던 무국적자의 국제적 보호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을 정지할 것을 비호국에 요청합니다. 수단의 상황이 안정되고 안보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신청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정지 조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단 국적자 및 과거 수단 상주 무국적자들의 현지 체재 중 신청

9. 현재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많은 수단인(또는 과거 수단에 상주한 무국적자)들은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부여된 교육 또는 취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기존 체류 자격을 필요한 기간 만큼 연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호 신청이 제한해서는

¹² 유엔총회,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7월 28일, UN, Treaty Series, Vol. 189, p. 137, www.unhcr.org/refworld/docid/3be01b964.html 및 유엔총회,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년 1월 31일, UN, Treaty Series, Vol. 606, p. 267, www.unhcr.org/refworld/docid/3ae6b3ae4.html.

¹³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5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F항에 의거한 배제조항의 적용, 2003년 9월 4일, CR/GIP/03/05, www.unhcr.org/refworld/docid/3f5857684.html.

¹⁴ 유엔난민기구, Operational Guidelines on Maintaining the Civilian and Humanitarian Character of Asylum, September 2006, www.refworld.org/docid/452b9bca2.html 참조.

안 될 것입니다.

10. 최근 사태 이전에 국제적 보호 요청이 거절된 수단인의 경우, 수단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상황 변화(사정변경)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비호 신청이 제출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난민 및 비호신청인 (타국 국적자)

11. 수단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분쟁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수단을 떠나기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수단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비호신청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수단 국적자들은 수단 내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집단이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부터 온 난민들도 상당수 수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¹⁵ 안전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들의 국제적 보호 신청은 국내 비호 절차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수단의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 환경인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난민은 다시 제3국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 역시 국제적 보호 신청이 국내 비호 절차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12. 또한 수단에서 다른 형태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와 국적 불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사람들이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국가에서 국내 비호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송환 금지 권고

13. 수단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당분간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비호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포함한 수단인 및 과거 수단에 상주하던 무국적자의 강제 송환을

¹⁵ 이러한 대상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국가별 지침은 다음을 참조. 유엔난민기구, 에티오피아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2022년 3월, www.refworld.org/docid/623079204.html; 유엔난민기구, UNHCR Position on Returns to South Sudan - Update III, 2021년 10월, www.refworld.org/docid/617676f04.html; 유엔난민기구, Position on Returns to Yemen - Update I, 2021년 10월, www.refworld.org/docid/6171436e4.html; 유엔난민기구, International Protection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People Fleeing the Syrian Arab Republic, Update VI, 2021년 3월, www.refworld.org/docid/606427d97.html; 유엔난민기구, Eligibility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Needs of Asylum-Seekers from Eritrea, 2011년 4월 20일, www.refworld.org/docid/4d4afe0ec2.html.

중단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조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수단의 치안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이 가능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4.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보호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단의 상황을 계속하여 감독할 것입니다.